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25 선고 2019가단1807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19. 9. 25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,293,733원 및 그 중 40,096,000원에 대하여 2019.1. 7.부터 2019. 7. 11.까지는 연 9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,293,733원 및 그 중 40,096,000원에 대하여 2019. 1.7.부터 2019. 7. 1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 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)
3. 일부기각의 이유: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. 6. 1. 시행) 및 동 부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. 6. 1.부터 연 12%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.

다만,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4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.

판사 정동주

별지